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정춘생·차규근·조 국

이해민 · 김재원 · 서왕진

김선민 · 강경숙 · 황운하

김준형 • 이학영 • 신장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 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중 "변호사를 선임"을 "대리인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변호사가"를 "대리인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호사는"을 "대리인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	
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u>변호사를 선</u>	대리인을 지정-
<u>임</u> 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	
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u>변호사</u>	대리인
의 인적사항 및 <u>변호사가</u> 서명	<u>대리인이</u>
한 문서로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	②
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	
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	<u>대</u>
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	<u>리인은</u>
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	
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4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 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 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 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 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 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 고등"은 "신고자"로, "공익신 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 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 ⑧ (생 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14조제2항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1 0 (코케키 기 0)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
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저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2. (생략) <신설>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
<u>다.</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 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 다.

- 3.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

3. (생략) ⑥·⑦ (생략)